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132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7.09㎡를 인도하고,
나. 13,669,370원 및 2024. 3. 26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,
다.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. 8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경민

별지